

의정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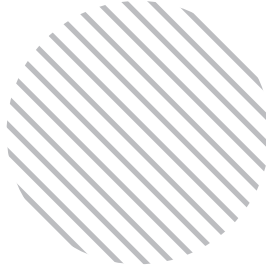
2017-7호

7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7



CHAPTER. 1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05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06
-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09
-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2
-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16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19

CHAPTER. 2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21

- 괴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22
-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25
-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7
-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32
- 광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34



CHAPTER. 3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37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정책의 방향, 역차별 해소를 최우선으로 38
- 대전광역시의회 인구증가 방안 마련 특별위원회 가동 39
- 울산광역시의회 하절기 비회기중 「의원 일일근무제」 운영 40
- 충청북도의회 수해 피해 현황 청취 및 현장 확인 41

CHAPTER. 4



최근 제·개정 법령

43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8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50

CHAPTER. 5



대법원 판례

51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52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54
- 소유권 말소등기 56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17-7호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http://council.chungnam.go.kr>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06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09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2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19



1.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7.30.] [서울특별시조례 제5972호, 2015.7.30., 제정]

주요목적

서울특별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2. “서울 미래유산”이란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래유산 중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예술·산업노동·정치역사·도시관리·시민생활 등 분야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의 운영) 위원장 선임 등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서울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제15조(서울 미래유산의 취소)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서울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시 소유 서울 미래유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 소유 서울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 소유 서울 미래유산 운영의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기록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기타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18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시행 2017.7.17.] [인천광역시조례 제5844호, 2017.7.17., 제정]

주요목적

인천광역시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2.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3.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
4. 습지와 관련된 습지보전기본계획과의 연계 실천방향
5.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군수·구청장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실천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시장은 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2. 실천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3.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반직공무원인 위원은 재직인원의 과반수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경제부시장과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연안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내륙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연안습지 및 내륙습지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⑦ 간사는 연안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연안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결과를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① 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군수·구청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습지보전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홍보) 시장은 군·구,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국제협력의 증진)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7.17.] [경기도조례 제4968호, 2015.7.17., 제정]

주요목적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임대차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주택임대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 인접한 몇 개 시·군 단위별 조정업무를 총괄하는 지구별 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임차료 등”이라 한다)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주택임대차와 관한 분쟁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법무사·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소비자보호활동 및 주택임대차 분쟁에 관한 상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경기도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5.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및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진술,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분쟁 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를 인정할 경우

③ 사건을 담당한 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며, 해당 위원 및 분쟁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④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가 해당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그 요구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3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분쟁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 안전을 설명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심의안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비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의 성명 및 발언내용
3. 조정사항 및 조정결과
4.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조정 신청 및 실시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서가 접수된 후 유선, 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신청인에게 접수취지를 통지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은 유선, 대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대면의 경우 쌍방 당사자와 동시에 대면하거나 순차적으로 일방 당사자와 대면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신청의 반려 및 중지)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 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3. 분쟁조정 신청 자체로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4. 이미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을 다시 신청한 경우
5. 분쟁조정 신청자가 조정 신청을 취하한 경우
6.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분쟁조정 사항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때

3. 조정신청이 있는 후에 소송이 제기된 때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반려되거나 조정이 중지된 때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종결) 위원회는 각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제13조(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진단·조사·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신청자가 분쟁을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요청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지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수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수락서는 간사가 3부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각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당사자에게 각각 1부씩 교부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동의를 얻어서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7.7.20.] [경상남도조례 제4318호, 2017.7.20., 제정]

주요목적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상남도 경제발전에 기여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항공기 등”이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및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 Personal Air Vehicle)를 말한다.
2. “무인항공기 등 산업”이란 무인항공기 등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인항공기 등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의 운용과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인항공기 등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무인항공기 등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무인항공기 등 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무인항공기 등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해마다 평가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제3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연구개발 등) ①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 산업 관련 국제행사의 개최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2.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3. 무인항공기 등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
 4. 무인항공기 등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정보 확산
 2.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3.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4. 개발인력 및 사용자 수요확산을 위한 인력 양성
 5. 국내외 관련 산학연과의 교류·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인항공기 등 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무인항공기 조종 경기대회 등) ①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발전을 위하여 무인항공기 조종 경기대회 등 관련 대회를 개최하거나 이를 개최하는 기관·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인항공기 조종 경기대회 등 관련 대회를 위한 안전한 공간 및 장소 확보와 참가비행체의 크기, 경기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안전교육)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 조종자 안전운행 교육
2. 무인항공기 등 산업종사자 안전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무인항공기 등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연구개발과 실용화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경상남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업지원 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연구개발과 실용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관련 연구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 기술개발 및 연구
2. 무인항공기 등 세미나 개최 등 정보교류
3. 무인항공기 조종 경기대회 등 관련 대회 개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17.7.2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97호, 2017.7.25., 제정]

주요목적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지원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 활용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도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에 관한 사업
3. 학생의 생태·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4. 학생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업
5. 학생의 제주이해교육에 관한 사업
6. 학생의 진로교육에 관한 사업
7. 학생의 통일교육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무 위탁)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단체,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표창)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활동이 우수한 퇴직교직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http://council.chungnam.go.kr>

- 괴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22
-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25
-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7
-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32
- 광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34



1. **괴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332호, 2017.7.28., 제정]

주요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 외 추가 지원 대상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이하 “산후 건강관리사”라 한다)”란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이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5. “바우처”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서비스 제공기관이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한 차액을 말한다.
7. “지침”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산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우처 지원 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산모에 한정하여 본인부담금 비용을 지원한다.

가. 소득기준 : 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이내 출산 가정

나.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다. 지원비용 :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퍼센트 해당 금액

2. 바우처 지원 초과 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산모에 한정하여 산후 건강관리사 지원 및 본인부담금 비용을 지원한다.

가. 소득기준 : 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초과 출산 가정

나. 거주요건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다. 지원비용 : 산후건강관리사 지원비용(바우처) 전액 및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퍼센트 해당 금액

라. 지원조건 : 지침의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제4조(지원신청) ① 산후 건강관리사 지원 희망 대상자는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산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주민등록등(초)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1부
5. 출산(예정) 증명서류 1부

제5조(지원대상 여부확인)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괴산군 거주기간
2. 제3조제1호·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6조(서비스비용 청구 및 지급) 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본인부담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3. 본인통장사본 1부

② 군수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종료 전 타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산후 건강관리사 지원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중단한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산후 건강관리사 지원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2.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시행 2017.7.14.]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434호, 2017.7.14., 제정]

주요목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이하 “횡단안전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계획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횡단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투광기 설치와 개선에 관한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횡단보도에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설치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투광기 설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7.28.]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426호, 2017.7.28., 제정]

주요목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이용 효율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상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전력 판매수익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에너지법」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5.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
6.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사업
7.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용자 또는 보조 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기금을 용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제6조제1호의 사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6조제2호의 사업 :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교체 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6조제3호의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 가. 신·재생에너지의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 나.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 다.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4. 제6조제4호의 사업 :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
5. 제6조제5호의 사업 :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자

② 기금의 용자 또는 보조의 절차·한도액·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 계획안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의 용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소관 업무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소관 업무 부서의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③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기금에서 집행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보고서 및 정산 결과 보고서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특정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관 업무 담당 국장

2. 전주시의회 의원 1명

3. 기후변화 대응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에너지 업무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용자금 또는 보조금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금을 용자 또는 보조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용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용자 또는 보조 받은 자가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해지·회수한다. 이 경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4.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7.7.28.]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697호, 2017.7.28., 제정]

주요목적

익산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 및 벽보
2. 시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5제곱미터 이상) : 장당 1,000원
2. 현수막(5제곱미터 미만) : 장당 500원
3. 벽보(A4 크기 이상) : 장당 150원
4. 벽보(A4 크기 미만) : 장당 100원
5. 전단지 : 장당 20원
6. 명함형 전단지 : 장당 10원

② 수거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일 1회 1인 20,000원으로 하며, 1인당 월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지급대상) 수거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시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일 세대원중 1인에 한한다.

1. 신청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광고물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주변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 현장 사진 또는 인쇄물과 함께 평일 근무시간에 불법광고물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같은 달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즉시 중지한다.

제7조(보상금지급 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
3.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
4.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5.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가 수거한 광고물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거보상금의 조달) 시장은 수거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5. 광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7.28.]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512호, 2017.7.28., 제정]

주요목적

광양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안사항”이란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전,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해당 상임위원회
2.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와 관련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해당 상임위원회
3. 해당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 : 의회운영위원회

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17-7호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http://council.chungnam.go.kr>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정책의 방향, 역차별 해소를 최우선으로 38

대전광역시의회 인구증가 방안 마련 특별위원회 가동 39

울산광역시의회 하절기 비회기중 「의원 일일근무제」 운영 40

충청북도의회 수해 피해 현황 청취 및 현장 확인 41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정책의 방향, 역차별 해소를 최우선으로!

‘혁신학교에만 배치되는 행정지원인력’, ‘과밀학교 근무교사의 업무과중’, ‘건물방향 등 시설에 대한 고려 없는 전기료 산출’, ‘최신 시설을 갖춘 신설학교가 있는 반면 30~40년 이상 된 낡은 학교’ ... 등 교육현장에 수많은 역차별 사례들이 존재한다. 세심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이 가능함에도 상당수가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의회 오은택 의원(*남구 제2선거구)은 7.25, 5분자유발언을 통해 - 이러한 ‘교육현장의 역차별 해소’가 교육정책의 최우선 정책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학교현장의 다양한 역차별 사례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으로, ‘역차별 해소관점’의 교육정책 추진 노력, 현재 교사 가산점 및 수당 등 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TF팀 운영을 제안했다.

대전광역시의회

인구증가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가동

대전광역시의회 「인구증가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최선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필웅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몇 년 새 우리 대전의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지역의 자율적 성장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인구증가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저출산 및 인구유출 등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증가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의결 되었다.

울산광역시의회

하절기 비회기중 「의원 일일근무제」 운영

회기가 없는 하절기 한 달간 민의수렴과 민원상담 등 공백 없는 대민 의정활동이 전개된다.

시의회(의장 윤시철)는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을 시작으로, 18명의 의원이 순번제로 의원 일일근무를 실시하여 민의수렴과 민원상담 등 대민 의정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절기 비회기 중이라도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시의회를 방문하거나, 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229-5063) 또는 당직 의원실로 문의를 하면 당직의원이 민원과 직접 상담한 후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는 등 민원 해결에 나선다.

또한,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민원은 처리과정과 계획 등을 별도 통보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1월과 8월 비회기 중에 의원 일일 근무를 실시하여 시민 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민원을 해결 하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공백 없는 의정활동을 해왔다.

충청북도의회

수해 피해 현황 청취 및 현장 확인

- 수해로 인한 경제 및 농업 피해 신속히 복구 할 것 -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의영)는 19일 경제통상국·농정국·충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수해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철저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피해 현황 확인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도내 일원의 수해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먼저, 보은군 내북면 도원리 일원 피해규모 1,000㎡의 도원천 유실 현장을 확인하고, 청주시 미원면 소재의 쏘가리 양식장을 방문하여 침수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액 7억원 규모의 현장을 둘러보았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재난에 휩싸여 걱정과 시름에 잠겨 있는 피해 주민에게 진심어린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청주시 미원면 옥화리 수해 현장을 방문하던 중 오리농장의 유일한 진입로가 호우로 유실되어 오도가도 못해 망연자실 서 있던 오리 사육농가를 만나 현장에서 바로 덤프트럭과 굴삭기가 투입되도록 민원해결 조치를 요구했다. 오리 사육 농가인 조씨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의 도움으로 오리와 염소 수천마리와 부화를 앞둔 만여 개의 오리알을 구할 수 있어 너무 다행이다”라는 말을 전했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17-7호

최근 제·개정 법령

<http://council.chungnam.go.kr>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8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50



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18.] [대통령령 제28190호, 2017.7.17., 제정]

제정이유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를 효율적으로 경감·예방하기 위하여 홍수피해 및 가뭄 상황조사, 수문(水文)조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44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시기, 수문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실시(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홍수 및 가뭄으로 인한 피해현황 및 피해 발생원인 분석 등이 포함된 상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체계화·효율화를 위하여 수문조사 현황분석, 수문조사 사업의 성과평가 등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수문조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다.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문조사를 위하여 수문조사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 및 상근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의 수립(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

-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수자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이 포함된 수자원장기종합

계획과 하천유역의 이수(利水) 및 치수(治水) 관리계획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흐르는 하천유역의 치수 현황 및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유역차원의 종합대책이 포함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2)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이용·배분 및 개발·공급에 관한 사항과 홍수·가뭄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마.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제22조)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는 이수·치수부문에 대하여 10년 주기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수·치수 환경변화, 준공연도, 제원변경 등 수자원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시설별로 재평가주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8.4.] [대통령령 제28206호, 2017.7.24., 제정]

제정이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등과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운영,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치·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운영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위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13호, 2016. 2. 3. 공포, 2017. 8. 4. 시행)됨에 따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세부 지정 요건을 정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의 위탁 대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2조 및 제3조)

- 1)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촉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이 정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 2)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 소집하도록 하고,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도록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3)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운영(제5조)

- 1)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 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법인·단체·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3)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실적,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요건(제7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상담·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및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 등을 각각 갖추도록 함.

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의 위탁(제11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2)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 3)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실적,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운영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7.18.] [대통령령 제28181호, 2017.7.11.,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부지 면적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기업형임대주택 외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며,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542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부지 면적을 하향 조정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의 기업형임대주택 의무 건설·공급 비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기업형임대주택 의무 건설·공급 비율(제18조제2항 신설)

복합적 토지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사용되는 부지 면적을 하향 조정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는 감소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구 내 전체 주택의 6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도록 함.

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제30조의2 신설)

기업형임대주택 사업 시행자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총수 등 동의 요건의 산정 기준일을 지구 지정 고시일로 하고,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하는 등 토지 소유자 수(數)의 산정방법을 정함.

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제31조제1항)

-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주택이 아닌 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일부 시설만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정온(靜穩)한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특정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
- 2)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급촉진지구 내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종류를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 구체적으로 정함.

라.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 절차 및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의2 및 별표 3 제2호마목 신설)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00만원, 3회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7.7.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 2017.7.3., 일부개정]

개정이유

동물을 판매, 수입 또는 생산하는 영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하며, 동물을 경매하는 영업장의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시설 기준 등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최소화(안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함.

나.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명확화(안 제3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소비자에게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동물판매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동물수입업과 동물생산업의 범위를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확대함.

다. 경매장의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신설(안 별표 9 제1호라목, 별표 10 제1호파목 신설)

- 1) 동물판매업자가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하는 영업장은 3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소독장비 및 건강검진 검사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시설·인력기준을 정함.
- 2)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하는 영업장을 운영하려는 동물판매업자는 경매수수료와 경매일정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17-7호

대법원 판례

<http://council.chungnam.go.kr>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54

소유권 말소등기 56



1.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대법원, 2013두2945, 2017.6.15]

판시사항

-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2] 甲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자 이를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2] 甲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자 이를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개인정보와 연계되어 각종 광고 마케팅에 이용되거나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 반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구제방법을 찾기 어렵는데도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거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해자가 부득이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점,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하는 국가로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할 것이 아니라 만약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16도16121, 2017.6.8]

판시사항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7다204230, 2017.6.15]

판시사항

구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국가가 용도를 지정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매수인이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당해 재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는데, 지정된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당해 재산을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특약의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당초 지정된 기일에서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던 기간만큼 연장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유재산법 제41조 제3호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국가가 용도를 지정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매수인이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당해 재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위 특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석문제에 해당하지만,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처분이라는 공익과 매수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정된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당해 재산을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당초 지정된 기일에서 적어도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던 기간만큼 연장된다.

MEMO

의 정 정 보

- 발 행 일 : 2017년 7월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연 락 처 : (041) 635-5123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